

#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2. 15. 오선균 의원, 이정임 의원의 3인
- 나. 회 부 일 자 : 2011. 2. 16.
- 다. 상 정 일 자 : 2011. 2. 21.(제17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오선균 위원)

###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령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함.

### 나.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건강가정의 유지발전을 위한 시책추진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제2장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제7조 내지 12조)
  - 건강가정지원사업 수행단체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제14조)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홍완식)

-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코자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1장 총칙에서는 건강가정의 유지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시책 추진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제2장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의 중심이 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수요자중심의 서비스전달체

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강화와 가족관계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우리시를 포함 전국의 139개소에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자료 참조)

- 핵가족화와 경기침체등으로 가족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전가정을 육성하고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책추진은 시대적 요구이며, 시민화합과 삶의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령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등을 통한 집행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는바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 (답변자 : 오선균 위원, 여성정책과장)

“없 음”

5. **기타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1부. 끝.